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가. 발의자 : 정진술 의원 외 10명
- 나. 의안번호 : 제 1058 호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0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0. 22.

2. 제안이유

-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범위 및 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,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를 외부위탁 시행하고자 할 때 서울기술연구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서울기술연구원의 기능 제고는 물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목적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함(안 제1조).
- 나. 기존 조사·연구 수행으로 한정된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구체화 함(안 제4조).
- 다. 서울시와 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·기

술개발·연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연구원의 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(안 제4조의2)

라. 원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대해 현행의 ‘연구분야’에서 ‘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로 확대하고, 사업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, 서울시가 시정 관련 연구·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서울기술연구원을 다른 기관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■ 주요 골자별 의견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」을 명기하여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 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[표 1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1조)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_____ 「재단법인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_____</p> <hr/> <hr/> <hr/>

- 안 제4조는 기존 조사연구 분야에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조제목을 “연구분야”에서 보다 포괄적인 명칭인 “사업”으로 변경하고 연구 분야를 다음 [표 2]와 같이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 2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4조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연구분야) ① 연구원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.	제4조(사업)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.
1. 재난 예방 및 대응(지진, 화재, 폭염·한파, 폭설, 산사태 등)	1.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
2.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(도로, 지하철, 주택건축, 교량 등)	2.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
3. 물 순환 및 하천관리(풍수해, 생태, 하수도 등)	3.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
<신 설>	4.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
<신 설>	5.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
<신 설>	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
<신 설>	7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<신 설>	8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
4.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9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-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사업의 범위를 ‘조사·연구’에서 ‘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안 제4호에서 제7호까지는 현행 제4호인 “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”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현안 시정관련 각

종 기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내용을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려는 것임.

- 참고로, 서울기술연구원은 현재 정원 75명 중 현원 72명으로 2본부 7실 2센터의 조직을 구성하여 2018년부터 금년까지의 계속연구과제 24건과 금년 신규연구과제 40건 등 총 64개의 연구과제를 추진중에 있음 ([표 3]참조).

[표 3] 개정안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부서 및 사업명 ('18년~'19년)

제4조(사업)	연구부서	사업명
1.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	안전방재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지진 대응 방안 연구 · 서울시 도시재난에 대비한 종합 방재대책 기획연구 · 서울시 지진 피해예측 기술개발 기획 연구 · 지진 발생에 대비한 비상도로망 지정 관리방안 연구 · 서울시, UNDRR 를 모델 도시 인증 추진연구 · 체감형 도시폭염 실태평가 및 모의기술개발 기획연구
2.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	도시인프라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시설물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비용예측 기술 연구 · 객체정보모델링(BIM) 기반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연구 · 노후 도시기반 시설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획연구 ·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효과 검증(1차) · 구조물 포장 유지관리 기준 개발 (1차) · 드론 등을 이용한 교량시설물의 3차원 정보모델링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 · GNSS 기술현황과 활용성 검토에 관한 연구 · IoT기반의 친환경 제설 기술 연구 ·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(2차) · 비재생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건설재료 및 적용기술 개발 연구 · 첨단 IoT 기술 기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 연구
3.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	도시인프라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강수중보 운영관리 방안 지원 연구 · 한강수위 저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와 도시 인프라 영향 연구 · 벚꽃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 방안 연구 · 투수포장의 투수지속성 유지관리 방안 연구 · 한강하류의 미래비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기획연구 · 고밀도 도시에 적합한 물수지 분석과 지하수위 관리 방안 연구 · 지하수보전을 위한 굴착 및 지하시설물의 지하수 배제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· 물순환 회복을 위한 벚꽃마을 최적 관리 기술개발 연구 ·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의 활용 방안 연구
	안전방재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 기획연구 · 서울시 강우 특성 변화에 따른 수공구조물 설계변도 영향평가 연구 · 강수 유형에 따른 서울시 관내 지역별 폭우 특성 규명 연구 ·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홍수기 수문 조사·분석 연구 · 하수관거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및 성능개선 방안 연구

제4조(사업)	연구부서	사업명
4.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	생활환경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대책 연구 · 서울시 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· 소규모 취약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 · 서울시 건축기술 미래수요발굴 및 기술선진화방안 연구 · 3종 시설물(건축물)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기술 고도화 연구 · 서울시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설정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· 서울시 건축물의 안전통합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· 서울시 건축물의 에너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·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
5. 스마트도시 조성·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	스마트도시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로에너지 공공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 · 서울시 사물인터넷 구축 지원 연구 · Digital 기반 도시공간 의사결정 지원체계 연구 · 서울형 혁신융합 미래도시 기획 연구 ·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한 보행량 추정 기법 연구 · 경전철 추가 도입을 위한 개선 과제 연구 ·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(BIPV)시스템 현황 및 적용 방안 연구 ·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· CCTV에 나타난 범죄 상황 인지 기술 개발 · 서울기술연구원 R&D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환경 구축 ·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개선 방안 연구 ·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· 서울시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표준인증을 위한 현장기술 검증 및 표준화 연구
	도시인프라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객체정보모델링(BIM) 기반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연구 · 드론 등을 이용한 교량시설물의 3차원 정보모델링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 · GNSS 기술현황과 활용성 검토에 관한 연구 · IoT기반의 친환경 체계 기술 연구 · 첨단 IoT 기술 기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 연구
	안전방재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 기획연구
	생활환경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· 서울시 건축기술 미래수요발굴 및 기술선진화방안 연구 · 서울시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설정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· 서울시 건축물의 에너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
	미세먼지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P카메라 기반 스모그 감시기술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
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	미세먼지 연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증제 도입에 따른 광산란방식 대기중 미세먼지(PM-2.5/PM-10) 측정기 운영 방안 연구 ·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운영 방안 연구 · IP카메라 기반 스모그 감시기술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 ·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환기공조시설을 활용한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·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 성능기준 마련 연구 ·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· 위기수준 4단계 안개 탐지 및 차량사고 정확도 90%감지 기술 개발
7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	서울기술 혁신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혁신기술 제안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 계획 연구 · 혁신기술 제안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 검증 체계 연구(1차) · 신기술접수소 운영(혁신기술 검토 및 아이디어 검토, 테스트베드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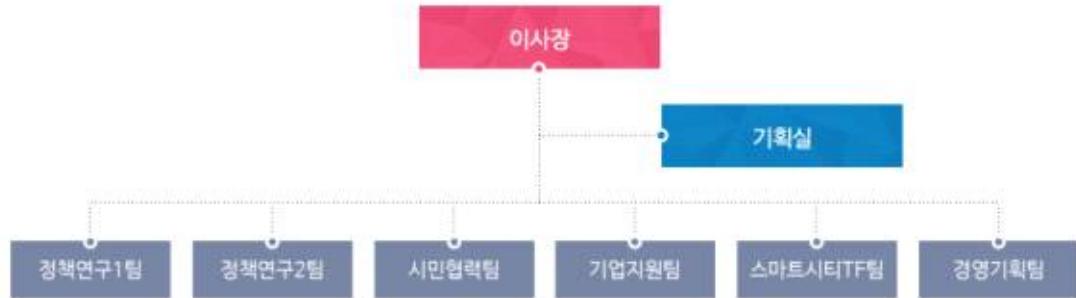
-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, 사업 범위에 ‘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’를 추가하는 것으로, 현재 생활환경 연구실에서는 ‘서울시 건축물의 에너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’ 등 8개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, 시민의 다양한 생활환경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.
-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‘스마트도시 조성 · 관리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’를 추가하는 것으로, 도시계획 · 관리, 교통, 에너지 분야에 빅데이터, IoT,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을 적용키 위한 것인데,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산하인 서울디지털재단 측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범위에 ‘스마트도시 조성 · 관리’ 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유사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서울디지털재단과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(2019.10.28.).
- 그러나 서울디지털재단은 주로 기술기업의 해외전시 참가지원 등 지원 · 협력사업과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구는 제한적으로 정책부분에 한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

◆ 서울디지털재단

- 설립주체 : 서울특별시
- 설립시기 : 2016. 1월
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기관소개 : 서울디지털재단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 건설을 위하여 삶과 소통

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정책연구를 통한 디지털 서울 전략제시, 디지털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, 디지털 서울 위상강화 및 디지털 혁신허브 운영을 하고 있음.

- 조직현황 : 1실5팀, 총 40명(임원 10명, 직원 30명 ('18년 12월 기준)



- 2018~2019년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

<2019년도>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

- 1) 스마트시티 정책연구
- 2)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
- 3)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
- 4)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
- 5)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
- 6)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보급 사업
- 7) 스마트시티즌랩 운영
- 8) 디지털혁신학교 운영
- 9)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
- 10) 디지털 국제협력
- 11)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
- 12) ICT·로봇 벤처리빙랩 구축사업(수탁)

<2018년도>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

- 1) 스마트시티 정책연구
- 2)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지원
- 3) 시장 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
- 4) 서울형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
- 5) 디지털 시민랩 구축·운영
- 6) 디지털 국제협력 사업
- 7) 한강 드론 페스티벌
- 8)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
- 9)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
- 10) 빅데이터 창업특화센터 구축사업

- 반면에,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각 실국의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 수요에 따라 ‘스마트도시연구실’ 외 4개의 연구실에서 개원이 후부터 24개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등 2020년에도 22건의 스마트도시 관련 연구가 계획되어 있어,

- 서울기술연구원으로써는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자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양 기관 간 중복연구 회피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춘다면 중복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 여겨짐.
- 안 제4조제1항제6호의 ‘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는 현재 ‘미세먼지연구실’에서 ‘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운영 방안 연구’ 등 7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 관련 연구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음.
- 다음으로, 안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는 ‘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현재 연구원이 신기술접수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가 앞장서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시정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- 안 제4조제1항제8호의 ‘서울특별시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’의 경우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각종 위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참고로,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 제4조와 같이 정관 제4조의 사업범위를 이미 변경하였는바, 향후 정관 개정 수요가 있을 경우 조례 개정의 선행 필요성 여부를 우

선적으로 검토하여 절차상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.

「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」 제4조 (사업의 범위)

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.

[2019.9.6. 개정]

1.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2.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3.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4.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5. 스마트도시 조성·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7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8. 서울특별시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
9.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한편, 안 제4조의2는 서울시와 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‘서울기술연구원’을 타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[표 4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4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조사기술개발·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·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

현 행	개 정 안
	<p>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</p> <p>2.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</p> <p>3.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터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</p> <p>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</p> <p>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

- 이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은 물론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이력관리와 DB구축, 현장 적용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「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- 마지막으로, 안 제6조제2항은 서울기술연구원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

[표 5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6조제2항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원) ① (생략)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	제6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¹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같은 법률 제28조²⁾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

- 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다음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1.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,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)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
 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 3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기관을 대표하는 장에게 이미 경영성과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3. 전년도 결산서
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